

[사 건 명] 행심 2018 - 9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초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 I. 사건개요

가. 청구인 ◇◇◇는 인천○○초등학교 학생으로 동급생 ○○○에 대한 학교폭  
력으로 2017. 12. 2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피청구  
인은 청구인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이라  
한다) 제17조에 의거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금지, 학생 및 학부모 부가적 특  
별교육 2시간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8. 1. 2.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2018. 1. 2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 하였다.

##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가. 학폭위 조치경과통지 조치원인을 보면 ‘청구인이 2017. 3.부터 9개월간 이유 없이 ○○○을 매일 3회 정도 상습적으로 괴롭혔다’ 는 ○○○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여 청구인에게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을 내렸다.

나. ‘전 담임선생님께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담임선생님이 ‘청구인 행동에 대응하지 말고 선생님께 이야기하라’ 고 하여 ○○○이 청구인 행동으로 힘들어하다 최근 방어하고 대응했다고 하나, 담임선생님은 이러한 말을 하신 적이 없다고 하였다.

다. 청구인 부모는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청구인이 ○○○으로부터 맞았다’ 는 말만 들어왔으며, ‘청구인이 ○○○을 때렸다’ 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고, 청구인이 자기보다 덩치가 큰 ○○○을 때리고 괴롭혔다는 말을 인정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이 ○○○ 구타에 한두 번 대응방어를 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을 가지고 본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

###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처분통지서 조치원인은 ○○○ 학생 측 주장으로, ○○○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여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라, 전담기구 사안조사결과 청구인이 ○○○에게 가해한 사실만 채택하고 인정해서 본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전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청구인이 제멋대로 행동하고 ○○○과 다툼이 자주 발생하자, ○○○에게 ‘청구인에게 바로 대응하지 말고 선생님한테 말을 하라’고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고, 전 담임선생님이 청구인이 ○○○을 때린 사실에 관해서 청구인 부모 측에도 말하였다.

다. 전, 현직 담임선생님과 전화통화, 상담일지를 보면 청구인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싸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전 담임선생님은 청구인이 ○○○에게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 상담한 사실이 있으며, 전화통화에서도 청구인이 ○○○을 때린 일에 대해 말했고, 학기 중 청구인이 침을 뱉기도 한 것에 대해서도 청구인 어머니에게 얘기하여, 청구인 어머니가 주의를 주겠다고 한 적도 있고, 청구인 자필확인서에도 청구인이 ○○○에게 피해를 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학폭위 위원들은 청구인과 ○○○ 측 주장과 제출자료, 담임선생님 상담일지, 통화내역 행동특성누가기록부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협의를 거쳐 청구인과 ○○○ 간 상호 가해 및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서로 분리하는 차원에서 본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의 행위는 학폭법에서 정의하는 폭력에 해당하므로 이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 Ⅳ.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1. 관계법령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

###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및 증거자료,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학기 초부터 동급생 ○○○과 자주 다투었고, ○○○이 때릴 때 피고인도 ○○○을 때리고, 화장실에 따라가 불을 끄고 문을 닫거나 눈을 던지는 등 행동을 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학폭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따돌림”이란 학교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위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이 자주 때려서 ○○○을 따라 화장실에 가서 불을 끄고 문을 닫거나, 눈을 던지는 등의 대응을 했을 뿐 ○○○을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담임선생님과 통화내역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인정하는 대응행위들만으로도 학폭법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중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어눌하고 자기표현을 잘 못하고, 2017. 3. 학기 초부터 수업시간에도 혼자 중얼거리거나 복도에서 큰 소리를 내는 등 학교규율을 잘 지키지 않아서, 같은 반 학생들과 문제가 발생했고, 학생 대부분이 청구인을 이해하려 했지만 자기주장이 강했던 ○○○은 청구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어 하면서 청구인과 자주 부딪치면서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 ○○○이 청구인을 때리거나 청구인이 ○○○을 때렸고, 청구인이 ○○○을 따라 화장실에 가서 불을 끄고 문을 닫는 등의 행동들을 하는 등 상호 간 폭력행위가 발생하자, 담임선생님은 ○○○에게 ‘청구인에게 뭐라고 하지 말고(대응하지 말고) 선생님한테 말하라’고 했지만 둘 간의 다툼이 지속됐고, 2학기 때는 청구인이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과의 다툼은 학기 말인 2017. 12.경까지도 지속되어서,

학기 초부터 지속된 청구인과 ○○○ 간 다툼은 고의성과 지속성이 인정되고, 청구인과 ○○○ 측 모두 서로의 피해사실만 주장하고 가해사실은 인정하지 않은 채 상대방으로부터 사과받기만을 바라는 등 침묵하게 대립하고, 청구인은 심리치료를 신청하고, ○○○도 병원치료까지 받는 등 본 사건이 청구인과 ○○○ 양측에 마음에 큰 상처로 남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자치위원회가 청구인과 ○○○ 양측에 대하여 학폭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2시간』 각 처분결정을 하고, 피청구인이 위 결정에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하다.

#### 다) 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위 법률 제17조의 의거하여 재량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